

의안번호	2202705
의 퇴 인	안규백의원
회 답 일	2024. 9.4.
추 계 번 호	24D2702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생활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8억원, 2030년 1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간 총 12억원(연평균 2억 4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참전유공자의 생활환경 등 조사 (안 제12조의4 신설)	800	100	100	100	100	1,200	240

주: 안 제4조제5호에 따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안 제12조의4에 따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제5호 신설(국가 등의 책무)	참전유공자의 의·식·주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	의무규정
2	안 제12조의4 신설(생활환경 등의 조사)	참전유공자의 생활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,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4조제5호 신설(국가 등의 책무)	×	미첨부3호 의·식·주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 추계가 어려움
2	안 제12조의4 신설(생활환경 등 의 조사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안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법안 심의의결 기간 및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,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참전유공자의 생활환경 등 조사(안 제12조의4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생활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,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참전유공자(217,391명, 2023년 12월 31일 기준) 전수조사 실시 시 8억원, 표본조사 실시 시 1억원으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함

- 전수조사의 경우 통일부의 ‘이산가족교류지원’사업의 내역사업인 ‘이산가족 실태조사’는 5년 주기로 실시하며, 2021년 전수조사 당시 8억원(이산가족 생존자 47,004명)의 예산이 소요되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이와 유사하게 8억원으로 추정
- 표본조사의 경우 통일부의 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’사업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실태 조사연구(1년 주기)를 위하여 2024년 9,537만원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하게 매년 1억원으로 추정

[표 2] 참전유공자의 생활환경 등의 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참전유공자의 생활환경 등 조사	800	100	100	100	100	1,200

주: 추계치해인 2026년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, 이후년도 부터는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자료: 국가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여은구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여은구	02-6788-4673	cecil@assembly.go.kr